
강원도 사무의 위탁 관련조례 제도개선 연구 · 용역 최종보고서

2020. 10.



강원도의회
GANGWON PROVINCIAL COUNCIL

제 출 문

강원도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강원도 사무의 위탁 관련조례 제도개선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한국자치법규연구소
대표자 최 인 혜

강원도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참여의원

			
의장 곽도영			
			
부의장 박효동		부의장 신도현	
			
자치법규연구회 회장 권순성			
			
간사 김경식	참여의원 김수철	참여의원 김혁동	참여의원 나일주
			
참여의원 심상화	참여의원 심영미	참여의원 안미모	참여의원 원태경
			
참여의원 윤석훈	참여의원 조성호	참여의원 조형연	참여의원 최종희

목 차

I 연구 개요	1
II 연구 추진 방향	3
III 인력투입 및 과업분담 내용	4
IV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 제도 이해	5
V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의 유형	11
VI 강원도 위탁 조례 문제점(입법 미비)	25
VII 강원도 위탁 조례 유형별 문제 사례	29
VIII 강원도 사무의 위탁 관련조례 현황	37
IX 강원도 사무의 위탁 관련조례 검토	41
X 강원도 사무의 위탁 통합 기본조례[안]	277

I

연구 개요

□ 과업명 : 강원도 사무의 위탁 관련조례 제도개선 연구

1. 연구의 목적

-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으로 정한 강원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위탁 관련조례의 발굴
- 법령에서 강원도지사에게 위탁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법령과 충돌하는 강원도의 위탁 관련조례 전반에 대하여 검토 및 합리적인 보완 방향 제시
- 강원도 사무 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무 위탁 제도의 법리 및 절차·방법 등을 먼저 이해하고 위탁 행정 실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공공서비스의 질(Quality) 향상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면서 자치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치행정의 완성을 기하고자 함
-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 의회로서 기능 강화 및 연구하는 강원도의회 이미지 제고

2. 연구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과 관련해, 부패의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위법·부당한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부처의 제도개선 권고 등에 따라 이를 조속히 개정 및 보완함

- 강원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거나 또는 위탁할 경우에 상위 법률에서 강원도지사가 위임·위탁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가 필요함(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

➔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으로 행정 권한자의 주체를 바꾸려면 별도의 법률상 근거 필요(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추36)

- 현재 강원도에서 민간부문(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 중인 관련조례와, 공공부문(출자·출연기관 등)의 위탁 관련조례를 대상으로 상위 법률상 위탁의 법적근거, 법정수탁대상기관의 적정성, 그밖에 절차적 사항의 법령 적합성 여부 등을 중점 검토

➔ 조례상 위탁의 법적근거 유무, 법정 수탁대상기관의 법적지위 가능 여부(법령상 자격 부여 등), 그밖에 위탁 관련조례의 절차적 사항들이 관련 법령과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 관련 법령상 기본조례(일반조례) 및 개별조례에 규정 사항의 위임 근거 여부 검토

➔ 관련 법령과 조례, 기본조례와 개별조례 간 불부합한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정비 방안 제시

Ⅱ

연구 추진 방향

1. 연구 수행에 따른 법적논거

- 관련 법령상 명문의 규정
- 사법부(법원) 판례
- 법제처 법령해석 및 의견 사례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
- 기타 정부소관부처 고시·지침 등

2. 연구 수행방법

- 현행 위탁 관련조례의 법령 적합성 여부 검토
- 현행 위탁 관련조례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검토
- 다른 지방자치단체 위탁 관련조례 비교·검토
- 정비 대상 조례 발굴 후 합리적 제도개선 방향 제시

3. 기타

- 조례상 위탁의 법적근거 유무 검토
- 조례상 법령 위임 적합성 여부 검토
- 위탁사무별 관련 조례 설치 여부 검토
- 조례상 입법미비로 법적 안정성 저하 규정 검토

III

인력 투입 및 과업 분담 내용

■ 연구인력 및 약력

연구자	책임 구분	현직 및 주요 경력
최인혜	[책임연구원] 연구 총괄	·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 · 고려대 국제관계학 박사
배석주	[공동연구원] 정비 대상 조례 발굴·검토 및 정보 조사 등	· 한국외대 행정학 박사 · (현) 한국외대 외래교수 · (전) 조순형 국회의원 보좌관

■ 과업분담 내역

직책	성명	업무 분장 내역
연구책임자	최인혜	· 연구 프로젝트 진행 총괄
공동연구원	배석주	· 정비 대상 조례 발굴 및 검토 · 판례 및 기관 의견 등 취합 · 문헌 정보 조사 등

IV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 제도 이해

1.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에 필요한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스스로 정립하는 권능을 뜻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규칙에 관한 입법 기능을 의미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헌법」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조례와 규칙에 관한 입법근거, 입법한계, 그리고 제정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헌법」

제117조 ① 자치단체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갖는 의미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고유사무라고도 함)를 처리할 수 있는 외에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위임사무도 함께 수행
- 지방자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책임과 권한 아래 수행하는 자치에 관한 사무의 범위를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필요성도 있기에 사무의 배분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기본 원칙

「지방자치법」

-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 규정

□ 주 내용으로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노력 의무, 조직과 운영, 규모의 합리화·적정성 의무, 법령 또는 상급 자치단체 조례 위반 금지 의무 등

□ 법령 준수 의무는 자치사무가 법령에 따라서 제정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특히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 준수 의무의 경우, 상급 자치단체는 하급 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지도·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상하 자치단체 사이에 늘 그러한 관계가 성립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이러한 지도·감독의 의무는 법령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 원칙임

다. 자치사무 확보에 관한 의미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고유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즉,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함께 처리하도록 규정함
- 위임사무란,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국가사무를 말한다. 위임사무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나뉜다.
-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법상 위탁이 가능한 사무는 단체위임사무임

【기관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가 위임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03조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등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단체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는 사무를 말한다. 기관위임사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한 단체위임사무는 위임된 이상 그 자치단체의 사무가 되므로 자주적 책임 하에 처리되며 취급과 집행에 있어서 고유사무와 동일하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분류】

구 분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부담으로 주민 복리를 위하여 처리하는 고유사무	법령으로 정한 사무를 국가 또는 광역사무로 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법령으로 정한 사무를 국가 또는 광역사무로 정하고 “지자체 장”에게 위임
근거	헌법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1항	지방자치법, 제9조1항 법령으로 정한 사무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경비 부담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보조할 수 있다고 표현되는 사무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사무	전액 국비 보조로써 교부금의 성격을 가진 사무
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 공동책임	국가 책임
법령 규정 형식	법령상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 통일이 필요치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로서, *법령에 “지방자치단체는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된 사무	법령상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사무로서, 법령에 “국가 또는 광역단체가 지자체에 위임한다”라는 규정 “~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규정 외에 법령에 “시·도 또는 시·군·구는 ~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	법령에 “○○○장관은 ○○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외에 “~을 하려는 자는 ○○○장관의 ○○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 중,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사무 법령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된 사무 중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
국가의 감독	소극적 감독	소극적 감독 (제한적) 적극 감독	소극적 감독 적극적 감독
지방의회 의 관여	감사 및 조사 조례 제정	감사 및 조사 조례 제정	사무 수행에 따른 필요 경비 부담에 외에는 사무 처리에 관여할 수 없음

V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의 유형

행정권한 법정주의(行政權限 法定主義)

“행정기관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주의로서, 그 권한을 변경하는 위임·위탁 시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도 법령에 따라 형성되고 제한되는 것인 바,(헌법재판소 2002.10.31. 결정 2001헌라1)
- 행정기관이 수탁사무를 다시 재위탁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추36 판결)
- 특정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그 근거를 법령에 두어야 가능하다.(법제처-의견제시 사례)

1. 민간위탁

가. 민간위탁의 개념

□ 사회복지 등 대주민 행정수요는 급격히 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대주민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총액임금제 등의 한계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 이러한 공무원 조직과 정원, 예산 문제 등을 극복하고 민간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

능률성 등을 최대화 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행정사무의 위탁이다.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이란, 법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부문(공공기관·공공단체) 또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민간부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부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전단의 자치사무(고유사무)와, 후단의 (개별)법령으로 정한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임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탁대상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법인·단체, 기관, 개인 등 민간부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개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률에 따라서 (단체)위임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개별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는 이미 판례로도 확립돼있다.

□ 자치사무(고유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고유사무 중 일부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나. 민간위탁의 범위

□ 국민의 권익침해적 사무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부문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행정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로 한정하고 있다.

【민간위탁 사무의 유형별 예시】

- 조사업무 : 자연환경 조사, 도로교통량 조사, 통계조사 등
- 검사·검정업무 : 특정물질 처리확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신체검사
- 관리업무 : 도시공원시설 관리, 도서관·박물관·환경기초시설 등

1. 민간 수행이 효율적인 비교적 단순 집행 기능
주차장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등
 2. 비권력적 시설관리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
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운영 등
 3.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기술을 갖춘 시험·연구·조사 기능
건설 안전시험, 교량 안전점검, 설계 감리 등
 4. 단순 집행적인 시설·장비 관리 기능
조경관리, 통신 장비관리, 관광지·유적지 관리 등
 5. 서비스 제공 기능
방역, 예방접종, 검사업무, 장묘(납골당, 공원묘지)관리, 시험관리 등
 6. 민간이 운영 시,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능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
- (2004-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실무 편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무는 분류상 규제사무 이외의 공공시설물 관리 등의 ‘단순사무’ 또는 ‘특허공법 및 신기술’ 및 ‘보건의료 인력 지원’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 등이 위탁의 대상이다.

【법령상 비권력적 사무와 규제사무의 정의】

○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가 대상

○ 행정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을 요하는 사무나 또는 인·허가 및 단속 업무 등 권력적 행정 및 규제사무 등은 원칙적으로 위탁이 불가

가. 법령상 민간위탁의 정의(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무를 위탁

나. 법령상 행정규제의 정의(「행정규제기본법」)

○ 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허가·인가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공장허가, 요식업 허가 등)
- 그밖에 지방세 징수, 법정 부담금, 주·정차 단속 등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 행위 등

2. 공공위탁

가. 공공위탁의 개념

□ **공공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으로 정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부문**이 아닌, **공공부문**(공공단체·공공기관)에 사무를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제151조)

□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무 중 일부를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51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공위탁의 범위

□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의 정의가 법률에서 명문화된 것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공공단체의 해석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였으며, 공공단체는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근거로 한다.

□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위탁의 대상기관으로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제104조 제2항),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제151조), 그 밖에 공공기관 등으로서

□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일부 출자·출연 연구원 등의 연구보고서에서도 공공부문의 위탁을 공공위탁으로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이 일반화 된 지금 본 연구보고서에서도 편의상 ‘공공위탁’이라 한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_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 방안(2015)

□ 한편 대법원은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법제처에서는 “공공단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하고 예산 지원 및 감독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법인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단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지원하는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체육회, 문화원 등 공법인이 해당된다 하겠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감사 등을 실시하여야 할 법적 권한과 책무가 따른다 하겠다.

□ 공공위탁의 수탁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탁 대상기관 선정·공모에 참여하여 법령·조례에 따라 구성된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후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되겠다.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정의】

「공공기관」

→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그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

「공공단체」

→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이 해당된다.(법제처 법령해석례 2009-0362, 10-0019) 또한, ‘그 기관’이라 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공공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하부·소속기관 등을 의미한다.(행정자치부 질의·회신, 2015-11-10)

3. 관리위탁

가. 관리위탁의 법적근거

□ 관리위탁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과 예산을 투입하여 직접 관리하던 공공시설을 제3자에게 관리·운영을 맡기는 것으로서, 수입·비용을 분석하여 적자가 예상되면 비용을 보조하고 경영 흑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세입·조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제3자가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를 대신하는 방식을 말한다.

□ 법상 유사 개념으로 ‘사용·수익허가’가 있는데 이는 행정 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정목적 외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흔히 임대라고도 한다. 주로 식당, 카페, 매점 등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이 대상이며, 사용자는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재산 용도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 관리위탁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의 사용·수익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법 제22조의 사용료 부과 및 제2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이 아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획 수립 시 관리방

법, 수입·지출비용을 산출하여 위탁료와 보조내용, 수입이 증대된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을 계약 전에 미리 정하고 반영하도록 하는 상계의 개념이다.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법」 제2조제1호)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 ② 제1항 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 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나. 관리위탁의 범위

□ 관리위탁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행정재산에 대하여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며, 수탁기관이 하는 행위의 법적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그에게 귀속된다.

□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해진 용도로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수탁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이 주목적이며, 법상 수탁대상기관으로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모두 참여 가능
→ 「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행정재산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위탁**을 우선 적용함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사무의 민간위탁과 중복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행정안전부_고시)

【관리위탁 대상시설 유형별 예시】

1. 비교적 단순 서비스 관리 시설
환승주차장 및 견인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관광지·유적지 관리, 장묘시설(납골당, 공원묘지) 관리 등
2.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
하수처리장, 재활용시설,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운영 등
3. 체육·문화시설 등 주민 이용 개방시설 등
종합운동장, 수영장, 족구장, 테니스장,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등
4. 시민 복지서비스 지원·관리가 효율적인 시설
각종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5.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설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 등 도시철도시설, 산업단지 시설 등

VI 강원도 위탁 조례 문제점(입법 미비)

구 분	문 제 점	개선방향
1.공공위탁 조례 미비 (공공단체) (공공기관)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15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한 후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도 강원도의 경우, 공공부문 위탁에 따른 절차·방법을 규율한 기본조례 미비 □ 강원도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서 민간위탁 시,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방법 등을 규율하면서도 공공부문 위탁에 관한 절차적 기본조례는 미제정 □ 강원도는 공공부문에 사무를 위탁하면서도 관련 조례의 입법 미비로 공공부문의 수탁기관 참여를 제한하거나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절차 하자 등으로 강원도의회 의결(동의) 권한 침해	공공위탁 대상사무의 근거 명문화 ↓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을 통합조례로 운용
2.행정재산 관리위탁 조례 미비 ↓ 자치단체 사무 위탁의 특례 규정	□ 행정재산 위탁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안부 고시)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여야 함에도 강원도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 등 법령과 불부합 □ 관리위탁은 행정재산(시설)의 관리·운영이 주목적이므로, 단순 프로그램 운영 사무는 적용 불가	관리위탁 대상사무의 절차적 기본조례 제정

「공공부문 위탁 조례」 제정 관련 (법제처)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 안건번호 : 의견 2017-0103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1. 질의요지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적용 여부

2. 의견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이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제1조), 제2조제1호에서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제2호에서는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공단체 등에 대한 위탁(제2항)과 민간위탁(제3항)을 구별해 각각의 위탁대상 사무범위와 수탁기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015. 6. 9. 의견제시 15-0110 참조), 즉,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의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대상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로 하되, 수임 또는 수탁기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3항의 경우에는 위탁대상 사무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제한하되, 수탁자의 범위를 제2항보다 넓게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1조에서 같은 조례의 법령상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하고 있어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1조의 규정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를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서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에 관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 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는 서울시장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 그 사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별도의 위임·위탁에 관한 자치법규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VII 강원도 위탁 관련조례 유형별 문제 사례

【사례 1】 상위 법적근거 없이 조례에 위탁 규정화

○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의 경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에서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도록 함

➔ 강원도 사무의 위탁 관련조례 총162개 중 88개 조례(54.3%)에서 위탁을 규정화

【사례 2】 법적근거 없이 조례에 출자출연기관 등 지정 위탁

○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강원도테크노파크의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강원도테크노파크에 기술 기반 조성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정 위탁하도록 함

➔ 강원도 위탁 관련조례 중 총11개 출자출연기관 조례에 지정 위탁

【사례 3】 관리위탁 대상인 행정재산을 민간위탁

○ 「강원도민회관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강원도민회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행정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_ 고시)에 따라서 관리위탁을 하여야 함에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민간위탁 하도록 함

➔ 강원도 위탁 관련조례 중 총37개 조례에서 관리위탁이 아닌 민간위탁을 규정화

【사례 4】 조례상 위탁 계약기간이 법령과 불부합

○ 「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역치매센터 등 일부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 법령과 불부합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2019 행정안전부 고시)

【사례 5】 상위 법적근거 없이 조례에 위탁·대행 규정

○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및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공관장에게 복무 감독권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달리 정함.(법상 지자체는 위탁 대상기관이 아님)

○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운영 조례」 제8조(사무의 위탁)에서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르면 강원도지사는 그 권한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 제1항제8호 사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경우, 법령상 위탁·대행할 수 있으려면 법령상 그 대상기관·대상사무가 특정되어야 함.(법제처_법령해석사례)

【사례 6】 조례상 위원회 구성·운영이 법령과 불부합

○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3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

➔ 또한, 제4항에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어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사항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불부합

□ 강원도 위탁사무 제도 운영상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제도의 개념 정의 및 이해 부족

→ 민간위탁·공공위탁, 관리위탁·위탁관리 혼용으로 절차상 하자 우려
되므로 법정 위탁 개념 구분 필요

◎ 위탁 구분 관련 체계적 연구, 매뉴얼 미흡으로 법령과 불부합

→ 위탁과 대행, 용역 등 유사 사무의 혼용으로 개념 구분이 필요

◎ 행정권한 법정주의의 원칙을 간과한 임의 위탁 남발

→ 법령이 아닌 조례로 위탁하고 있어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 교육 필요

◎ 사무의 위탁 시, 민간위탁 조례만 적용해 절차적 민주성 결여

→ 위탁사무가 법적 근거를 달리 함에도 민간위탁만 적용해 법령과 불부합

【지방자치단체 위탁의 법적근거 예시】

법령구분	법정 수탁대상기관	법조문	조례
「지방자치법」	.공공위탁 → 공공단체·공공기관	제104조제2항	
	→ 다른 지방자치단체	제151조	
	.민간위탁 → 법인·단체 그 기관, 개인	제104조제3항	「민간위탁 조례」
「공유재산법」	.관리위탁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제27조제1항	「공유재산 관리 조례」
	.위탁관리 → 특별법상 법인	제43조의2	

【중앙행정기관 위탁의 법적근거 예시】

법령구분	법정 수탁대상기관	법조문
「정부조직법」	.공공위탁 →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제6조제1항
	.민간위탁 → 법인·단체(그 기관), 개인	제6조제3항
「국유재산법」	.관리위탁 → 국가기관 외의 자	제29조제1항
	.위탁관리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제42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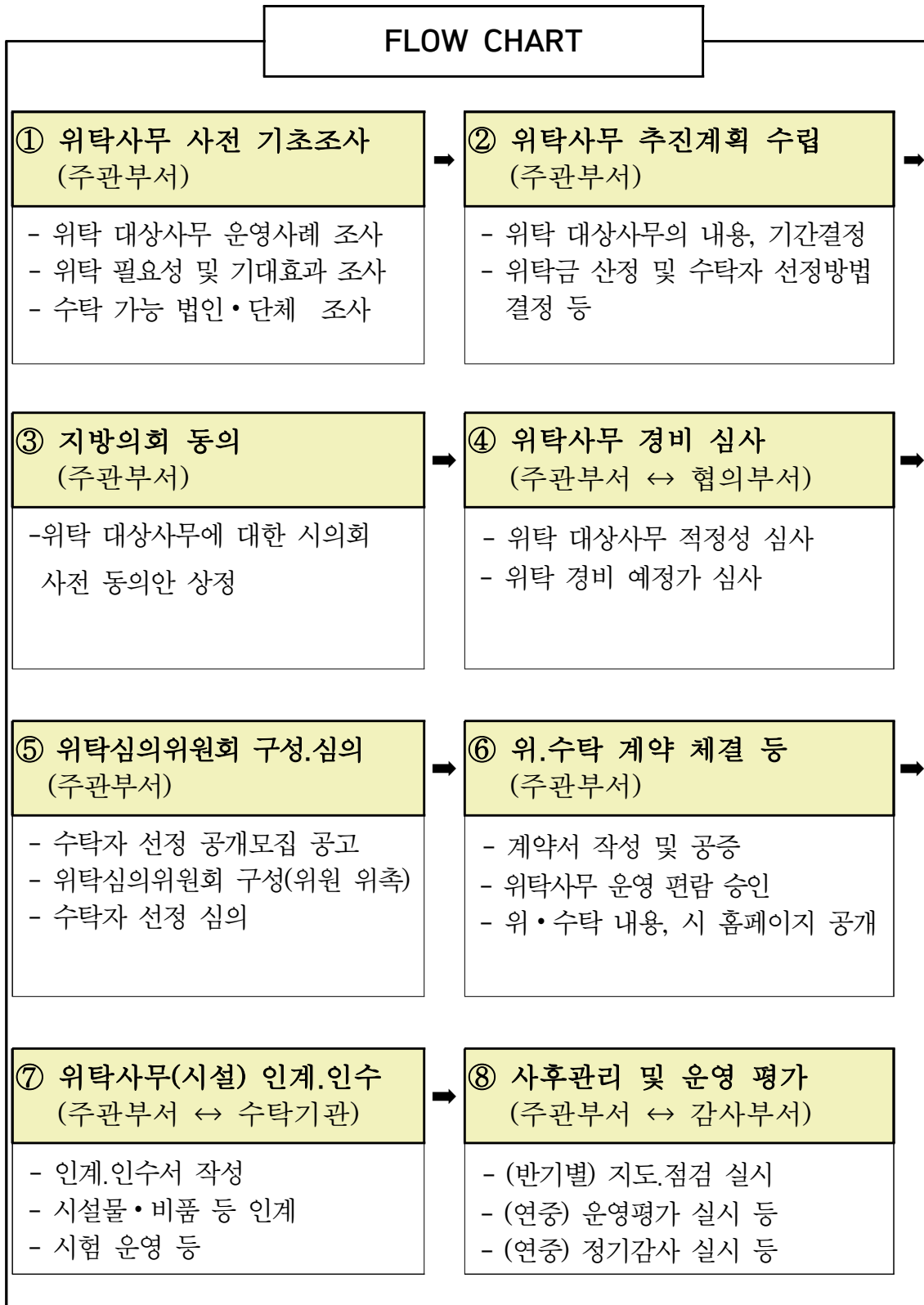
【강원도 사무 위탁의 제도개선 사항 요약】

구분	현행	개선안
위탁 대상사무의 성질 구분	민간위탁·공공위탁, 관리 위탁·위탁관리 혼용	법정 위탁 개념 구분 필요 (행정권한 법정주의)
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기준	위탁과 대행, 용역 등 유사 사무 혼용	유사 개념과의 구분 필요
위탁 시 적정성 판단 기준	위탁 시, 사무의 적정성 등 구체적 판단 기준 모호	명확한 적정성 판단 기준 제시
위탁사무의 법적근거 제시	사무 위탁 시 준용 근거 미흡	수탁기관 선정 및 절차적 사항 미리 제시
자치사무 위탁 동의	사무 위탁 시 자치사무만 의회 동의를 받고, 단체위 임사무는 모두 배제	위탁의 법률상 효력은 고 유사무, 단체위임사무 모두 동일하므로 준용
심의 위원회 적용 근거	사무 위탁 시 「강원도 민 간위탁 조례」의 심의위원 회가 수탁기관을 선정해 법정위원회가 모두 배제	법령상 법정위원회와 임의 위원회의 개념과 상관관계 제시로 합법성 도모
재계약(수의계약) 시 위원회 사전 평가·심의	재계약(수의계약)에 따른 심의위원회 평가 시 구체 적인 법적 기준이 없음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평가에 따른 자격(법적지 위) 명확화
민간위탁 조례 적용으로 공공부문이 모두 배제	사무 위탁 시 민간의 법 인·단체, 개인에게만 적용 하므로 공공부문이 모두 배제되므로 법령 위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통 합하는 위탁의 기본조례 제정으로 합법성 유지
공유재산의 위탁 조례 미제정·미비	행정재산의 관리 및 일반 재산관리·처분에 따른 위 탁 조례와 매뉴얼 미비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위탁에 따른 제도 정비로 위탁사무의 합법성 유지

【지방자치단체 위탁과 유사 개념과의 차이점】

유사 개념	내 용	근거법령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공공위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공공단체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51조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
위탁관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공유재산법」 제43조의2
대행	1. 권한대행;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단체장이 대신 권한 행사	「지방자치법」 제111조
	2. 업무대행;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에게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법적효력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
용역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 입장에서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할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말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타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것	「공유재산법」 제20조
지방 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해 재정상의 보조를 위하여 교부함	「지방재정법」 제2장의2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 절차도】



(2020년 8월 현재)

NO	부서명	조례명	사무유형
1	대변인	강원도 상징물 조례	자치사무
2	총무행정	강원도민회관 운영·관리 조례	자치사무
3	총무행정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위임사무
4	총무행정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5	총무행정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위임사무
6	기획조정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위임사무
7	기획조정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자치/위임
8	기획조정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위임사무
9	기획조정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10	기획조정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위임사무
11	기획조정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	자치사무
12	기획조정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위임사무
13	기획조정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위임사무
14	기획조정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자치사무
15	재난안전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위임사무
16	재난안전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위임사무
17	재난안전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자치사무
18	경제진흥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위임사무
19	경제진흥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위임사무
20	경제진흥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위임사무
21	경제진흥	강원도 숙련기술 장려 조례	위임사무
22	경제진흥	강원도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23	경제진흥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위임사무
24	경제진흥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사무
25	경제진흥	강원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26	경제진흥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위임사무
27	경제진흥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위임사무
28	경제진흥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29	경제진흥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자치사무
30	경제진흥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위임사무
31	첨단산업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위임사무
32	첨단산업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33	첨단산업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34	첨단산업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위임사무
35	첨단산업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36	첨단산업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위임사무
37	첨단산업	강원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38	첨단산업	강원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	위임사무
39	첨단산업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위임사무

NO	부서명	조례명	사무유형
40	첨단산업	강원도 대관령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자치사무
41	첨단산업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42	첨단산업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위임사무
43	첨단산업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44	첨단산업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위임사무
45	첨단산업	강원도 정보화 조례	위임사무
46	일자리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위임사무
47	일자리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	위임사무
48	일자리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위임사무
49	일자리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위임사무
50	일자리	강원도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	위임사무
51	일자리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위임사무
52	일자리	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위임사무
53	일자리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54	글로벌투자통상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위임사무
55	글로벌투자통상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	자치사무
56	글로벌투자통상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사무
57	글로벌투자통상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위임사무
58	글로벌투자통상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위임사무
59	문화관광체육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위임사무
60	문화관광체육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위임사무
61	문화관광체육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62	문화관광체육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위임사무
63	문화관광체육	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자치사무
64	문화관광체육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65	문화관광체육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운영 조례	위임사무
66	문화관광체육	강원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67	문화관광체육	강원도 평화·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위임사무
68	문화관광체육	강원도 관광엑스포 주제관 등 관리·운영 조례	자치사무
69	문화관광체육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	위임사무
70	문화관광체육	강원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위임사무
71	문화관광체육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72	문화관광체육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위임사무
73	문화관광체육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위임사무
74	문화관광체육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75	문화관광체육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위임사무
76	문화관광체육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위임사무
77	문화관광체육	강원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자치사무
78	문화관광체육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위임사무
79	문화관광체육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위임사무
80	문화관광체육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위임사무
81	문화관광체육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위임사무
82	문화관광체육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위임사무

NO	부서명	조례명	사무유형
83	문화관광체육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위임사무
84	문화관광체육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85	문화관광체육	강원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사무
86	문화관광체육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운영조례	자치사무
87	문화관광체육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사무
88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89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90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91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92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93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자치사무
94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자치사무
95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위임사무
96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97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보육 조례	위임사무
98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99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재활병원 조례	위임사무
100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101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임사무
102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위임사무
103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위임사무
104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105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임사무
106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위임사무
107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위임사무
108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109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위임사무
110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임사무
111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위임사무
112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위임사무
113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위임사무
114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115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위임사무
116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117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118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위임사무
119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위임사무
120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121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위임사무
122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123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124	보건복지여성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임사무
125	보건복지여성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위임사무

NO	부서명	조례명	사무유형
126	농정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위임사무
127	농정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위임사무
128	농정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위임사무
129	농정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위임사무
130	농정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위임사무
131	농정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132	농정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	위임사무
133	농정	강원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위임사무
134	녹색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135	녹색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위임사무
136	녹색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위임사무
137	녹색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임사무
138	녹색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위임사무
139	녹색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위임사무
140	녹색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위임사무
141	녹색	강원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	위임사무
142	녹색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위임사무
143	건설교통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144	건설교통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145	건설교통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위임사무
146	건설교통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위임사무
147	건설교통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위임사무
148	건설교통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운영 조례	위임사무
149	건설교통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150	평화지역발전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위임사무
151	평화지역발전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위임사무
152	평화지역발전	강원도 통일교육·문화 활성화 조례	위임사무
153	평화지역발전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154	소방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위임사무
155	소방	강원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임사무
156	직속기관_농업기술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자치사무
157	직속기관_농업기술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사무
158	직속기관_보건환경연구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159	출장소_해양항만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위임사무
160	사업소_자연환경연구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 조례	위임사무
161	사업소_디엠제트박물관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위임사무
162	사업소_동물위생시험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위임사무

IX

강원도 사무의 위탁 관련조례 검토

1. 「강원도 상징물 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상징물 조례」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1. 도지사 인증을 받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수익증대와 관련된 사업
2.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② 제1항의 위탁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사무	○	강원도 상징물 조례	공공·민간

2. 「강원도민회관 운영·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민회관 운영·관리 조례」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회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사무	○	강원도민회관 운영·관리 조례	공공·민간

3.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위임 사무	○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공공·민간

4.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0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 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원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및 기념행사
2. 강원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 수집·정리·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민주화운동 계승 사업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5.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4. 그 밖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제24조(감독권의 위촉) ①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촉할 수 있다.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10조(파견 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6.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조사 및 연구)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1조(교육실시) 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2.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
3. 도내 학생 및 청소년
4.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
5.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6. 그 밖에 필요한 대상별 교육 또는 교육희망자

④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관련협회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도내 인구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 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은「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위임 사무	○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공공·민간

7.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도지사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계약마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위임	○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민간

8.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75조의4(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
2.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주택, 일반건축물의 취득·개발·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4.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5. 건설자재의 생산 및 판매사업
6.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40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에 따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공기업법	위임 사무	○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지방공기업

9.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는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도지사는 2개 이상 기관이 공동으로 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10.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대출 및 상환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채권의 대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채권의 위탁·관리) ①채권의 발행, 보관 및 관리는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관장하되, 조례 제7조에 따라 채권의 대출 및 상환업무를 금고 은행에 위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금고 은행의 장은 그의 책임 하에 성실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채권 전자등록 절차 등) ②채권의 전자등록사무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금고은행에서 한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기금법	위임 사무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11.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

제8조(업무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따른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사무	○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	공공·민간

12.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지방세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제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강원도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강원도 관할 외의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른 시·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세기본법	위임 사무	○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	지방자치단체

13.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관리위탁 행정재산)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공유재산법	위임 사무	○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공공·민간)

14.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 교육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사무	○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공공·민간

15.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제6조(기초안전교육의 실시) ① 도지사는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재난안전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16.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6조(안전교육) ① 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재난안전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17.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협조를 받아 도내 군사시설 등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상황을 매년 파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사무	○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공공·민간

18.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6조(상인연합회) ①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조합·단체 및 「상법」상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2. 규약 또는 정관
3. 시장관리 운영계획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주차장 위탁 운영)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된 주차장에 대하여 상인 조직에 위탁 운영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전통시장법	위임 사무	○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19.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관련단체 또는 소상공인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공단의 이사장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5. 연합회의 회장
6. 소상공인 보호·지원 업무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대한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소상공인 보호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20.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보유, 기금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

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용자는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행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 용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 운전자금융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중소기업진흥법 지방기금법	위임 사무	○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21. 「강원도 숙련기술 장려 조례」

「숙련기술장려법」

제25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원도 숙련기술 장려 조례」

제10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대회 개최
2. 전국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3. 도대회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숙련기술장려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숙련기술 장려 조례	

22. 「강원도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설립)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위임 등) ① 제17조제6호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재단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재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중앙회의 회장은 신용보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평가)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를 관련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위임 사무	X	강원도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23.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탁·보조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보조의 대상·방법·절차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

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1조(사무국)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운영은 도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맡거나 도단위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되, 도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운영하는 기관·단체의 간부급이 겸직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노사관계발전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24.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타. 중소기업의 육성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도 출자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또는 수출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의 창업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6조의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7조의 제품홍보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8조의 수출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5. 제9조의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사무	○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공공·민간

25. 「강원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3조(근로자지원프로그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강원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3.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애의 예방, 이직가능성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
4.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근로복지기본법	위임 사무	○	강원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공공 · 민간

26.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제10조(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① 도지사는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노동자 권리와 복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강원도 노동자권익보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근로복지기본법	위임 사무	○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공공·민간

27. 「강원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제6조(위탁관리)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예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위임 사무	○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공공·민간

28.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운영 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4.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동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출연기관 또는 관련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사업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지원센터를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9.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공동체의 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5.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26조(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사무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공공·민간

30.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6조(대행점 지정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대행점을 지정할 경우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행점은 상품권의 유통업무 대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수탁 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도지사는 상품권 판매·환전 수수료, 할인판매 보전, 법인카드 결제 수수료 등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역사랑상품권법	위임 사무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공공 · 민간

31.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시설·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集積化) 촉진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한국공학한림원·시험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위한 강원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강원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①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술기반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지원사업
2. 신기술 기업의 창업 및 보육지원사업
3. 산업 및 기술에 관련된 정보의 유통사업
4.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5. 기술연구시설 등의 확충 및 기술연구의 집단화 추진사업
6. 강원지역 신기술 네트워크 구축 및 산·학·연·관 연계사업
7. 정부, 강원도지사,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8. 기타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테크노파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을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산업기술단지법 산업기술혁신법	위임 사무	X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32.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3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①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설치·운영한다.

② **활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
3. 제공을 위한 공공데이터 가공 등 관리 지원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5. 제1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및 창업 지원
6.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민간협력 및 국제협력 지원
- 6의2. 제15조의3에 따른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 실태조사 지원
7. 제17조에 따른 저작권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 지원
8. 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등록정보의 관리 지원
9. 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공표 지원 및 목록정보서비스
10.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관리 및 활용 촉진
11.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진단·평가 및 개선의 지원
12. 제2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지원
13. 제2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안 구축 지원
14. 제2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15. 제26조 및 제27조의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이용지원상담, 제공의 대행
16.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17. 그 밖에 공공데이터 효율적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제공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① 공공기관장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②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개발·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관련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①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활용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소관 공공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탁) ② 각 공공기관장은 제17조제3항, 제22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관하여 활용지원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조(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시·군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연계·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인구 요소 등)을 고려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수요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 관련 모니터링
3.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의 민간협력 사업
4. 그 밖에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탁) 도지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사항을「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공공데이터법	위임 사무	○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	공공

33.「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기관의 장 등에게 뿌리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도내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뿌리산업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34.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광역협력권의 광역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전략산업 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전략산업 육성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신사업 기획 및 연구
3. 국제 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4. 창업보육 및 인력양성
5. 해외 교류, 해외시장 진출, 홍보·마케팅 활성화
6.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국가균형발전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35.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이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 집적화를 위한 특화단지 조성 등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원

2. 이모빌리티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이모빌리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인증 및 지원 등을 위한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지원

4. 도내 이모빌리티 생산품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판로지원
5. 물류 및 관광산업 등에서의 이모빌리티 제품을 활용한 연계사업 지원
6. 자동차 부품기업 등의 이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지원
7. 그 밖에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마케팅의 지원)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설명회 등 참가에 따른 소요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위임 사무	○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 · 민간

36.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3(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3조(공동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공공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기반 확충 사업
2. 과학기술 연구·인력개발 촉진 사업
3. 과학기술 정보화사업
4.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사업
5. 전략산업 및 신기술개발 사업
6. 과학기술협력교류사업(국제협력교류사업을 포함한다)
7. 도민에 대한 과학기술의 이해증진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4조(연구기관 등 유치·지원)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신성장 동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기관 유치를 위해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기관 설립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2. 연구기관의 장비구입 등 기반확충
3.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발굴 추진
- 4 . 설립 초기 연구기관 운영비의 일부

제1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과학기술기본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37. 「강원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강원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식재산기본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38. 「강원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 목적 또는 사업 목적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 것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 요령」(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37호, 2020. 3. 25., 제정]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주관기관"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관, 기업·단체를 말한다.

10. "지원기관"이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장관이 배관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7조(주관기관 등) ③ 주관기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지원기관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사업비의 4% 이내에서 사업관리비를 지원기관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8조(지원기관 지정) ③ 지원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강원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

제7조(사업 위탁) ① 도지사는 LPG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관리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LPG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관리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액화석유가스법	위임 사무	○	강원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	비영리법인

39.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정관) ① 지방연구원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연구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각종 계획 및 대책 등의 수립
2. 기후변화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 및 종합정보 관리
4. 출연기관과 타 기관·단체가 의뢰한 연구 수탁사업
5.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및 지원 사업
6. 국내외 기후변화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
7.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기후변화 연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연구원법	위임 사무	X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40. 「강원도 대관령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사. 자연보호활동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강원도 대관령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전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의 전부를 그 설치목적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위에서 시설의 전부를 그 설치목적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
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사무	○	강원도 대관령신·재생에너지 전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공공 · 민간

41.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42호, 2020.2.4. 제정 / 시행 2021.2.5.)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전담기관, 유통전담기관, 안전전담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수소법	위임 사무	○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 · 민간

42.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15조(업무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2.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제14조(위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사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친환경자동차법	위임 사무	○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공공 · 민간

43.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6.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 운용성 증진

제7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권한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터넷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와 모바일서비스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괄부서, 주관부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도지사는 도정홍보,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공감 등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제6조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전자정부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4.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10조(위탁) 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 접근성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 조례	

45. 「강원도 정보화 조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정보화 조례」

제19조(최신정보기술서비스 육성) ①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최신의 정보기술, 융합기술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지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정보화 조례	

46.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0조(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3. 제15조의5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4.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조사, 자료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업무
 5. 제17조에 따른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도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고용정책기본법	위임 사무	○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공공 · 민간

47.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제18조(권한의 위임) 주무관청은 이 법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급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민법 공익법인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	

48.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 관리위탁하거나 사용·대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49.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청년기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
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
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
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정책 연구사업) ①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
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
행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청년지원사업단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강원도 청년지원사업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지원사업단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지원사업단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청년지원사업단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청년공간의 설치·운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청년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년공간을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청년기본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50.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 받아야 한다.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2.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7조(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 ① 도지사는 장년층의 원활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노후준비지원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51.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청년기본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52. 「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해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적성·장애유형에 맞는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직업적응 훈련시설 설치, 직업훈련과정 운영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8.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9. 기타 도지사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설치·운영 하거나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장애인고용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53.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이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경력단절여성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54.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발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2.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등 지원
3.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4.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5. 기업등 입주기관,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
6.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 지원
7.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8. 그 밖에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발전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그밖에 발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42조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혁신도시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혁신도시 관할 시·도지사는 발전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발전지원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4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혁신도시 사업 추진 및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혁신도시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55.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

제15조(국외본부 운영) ① 국외본부는 도가 직접 설립·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 산하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사무	○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	공공 · 민간

56.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타. 중소기업의 육성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내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수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위탁) ① 도지사는 강원상품 수출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각종 지원업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단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에 해당 사업의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수출지원 업무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사무	○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57.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58.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항공사업법」

제7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노선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5조(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사업의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기지 항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모기지 항공사의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공사 초기안정화를 위한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
2. 항공사 신규 정기노선 및 중장거리 노선 개설
3. 항공사 지속성장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
4. 항공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5. 신규 국내외 취항 정기노선의 현지 홍보마케팅
6. 강원도민 일자리 창출
7. 강원도 내 관광여행상품 개발

8. 기타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도내 모기지 항공사의 긴급 경영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항공사업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59.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관광진흥법」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① 시·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제35조에 따른 지정 취소
- 1의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
- 2의2. 삭제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 4의2.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및 등록
6. 제47조의7에 따른 사업의 수행
7.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8.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
9.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권한의 위탁)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6.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관한 권한: 한국관광공사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 관련 교육기관

가. 기본소양, 전문지식, 현장실무 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강사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강의실, 회의실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선발) ① 도지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 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사무 위탁)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이론 및 실습 평가와 실무수습 근무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관광진흥법	위임 사무	○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공공 · 민간

60.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 (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제5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
2. 관광서비스의 품질 및 관광경쟁력 향상
3.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
4.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5. 관광시설의 관리·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관광진흥법	위임 사무	○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민간

61.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 지정 및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조직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강원도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제6조의 전담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국제회의산업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62.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환경 대상시설 및 관광편의시설의 확충
 2.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3.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4.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5.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6.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관광진흥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민간

63. 「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 설치 및 관리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11조(지역축제 평가단)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 실무적 평가를 위하여 지역축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역축제 평가를 위한 평가단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평가단 운영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지원대상 축제 선정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사무	○	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공공 · 민간

64.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업무의 위탁·대행)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5.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운영 조례」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제75조의4(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운영 조례」

제4조(관리운영 위탁) ① 탄광문화촌은 원칙적으로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탄광문화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탄광문화촌의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관광진흥법 지방공기업법	위임 사무	○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6. 「강원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 조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2조의2(숲길의 종류) 숲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산로 :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이하 "등산")을 하는 길
2. 트레킹길 :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하 "트레킹")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길
 - 가. 둘레길 :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 나. 트레일 :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3. 레저스포츠길 : 산림에서 하는 레저·스포츠 활동(이하 "산악레저스포츠")을 하는 길
4. 탐방로: 산림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 활동(이하 "탐방")을 하는 길
5. 휴양·치유숲길 :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여가활동을 하는 길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① 숲길관리청이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 계획에 따라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 포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숲길의 조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숲길의 명칭을 부여하고 그 노선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된 노선의 변경, 지정 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등산·트레킹교육의 실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건전한 등산·트레킹문화의 정립 및 확산을 위하여 등산·트레킹교육을 실시하는 등산·트레킹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등산·트레킹학교 운영을 제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 등산·트레킹지원센터 또는 등산·트레킹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등산·트레킹교육의 위탁) 법 제2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산·트레킹의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민법」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등산·트레킹의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강원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 조례」

제7조(걷는 길 조성·관리 등) ② 도지사는 관계법령 및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걷는 길 조성·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에 걷는 길의 조성·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산림휴양법	위임 사무	○	강원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 조례	공공 · 민간

67. 「강원도 평화·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공원녹지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강원도 평화·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공원녹지법	위임 사무	○	강원도 평화·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공공 · 민간

68.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운영 조례」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엑스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운영계획, 사업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 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사무	○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운영 조례	공공 · 민간

69.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9조(위탁 운영) 도지사는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사무	○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	공공 · 민간

70. 「강원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 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제15조(위탁 운영)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술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위임 사무	○	강원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공공 · 민간

71.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예술인 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5.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6.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등록 지원 사업
 7.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8.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대행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예술인 복지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72.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운영과 위탁 관리)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외 공연장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지방공기업에게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사무	○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공공 · 민간

73.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제13조(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 또는 공공 기관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거주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국어기본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74.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도 또는 시·군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 부담은 국가·도 또는 시·군이 부담한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위임 사무	X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5.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 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담기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연구·조사 등의 위탁) 도지사는 강원학의 정립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센터에 연구·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인문학법	위임 사무	X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76.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문화산업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우수 문화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3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문화산업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77. 「강원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제5조(재능나눔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결연과 후원

3. 재능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재능나눔 홍보

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단체 등의 협력

5.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및 실비지원

6.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재능나눔 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재능나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능나눔 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사무	○	강원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공공 · 민간

78.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따라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 시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이용 촉진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전수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

3. 도서관시설

가.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나. 작은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1조(독서전문가의 양성) ①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문가 양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문가 양성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문가 양성교육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사무	○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공공 · 민간

79.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5조(권한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장애인복지법	위임 사무	○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민간

80.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14조(문화예술교육사업)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군, 학교, 교육시설, 교육단체와의 상호연계 협력망 구축·운영 사업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인턴십 사업
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5. 지역문화기반시설 및 유아 문화예술교육 사업
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문화예술교육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81.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제5조(이스포츠 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및 대회개최
3.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4. 이스포츠 학술 진흥 행사
5.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6.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8.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출자·출연기관, 도내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이스포츠시설·운영)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
2. 이스포츠 전문 인력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
4.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이스포츠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이스포츠 (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82.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수어 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는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농인의 언어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도지사는 농인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한국수어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도민에게 적절한 한국수어 교육이 제공 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농문화 육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인이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
2. 도민이 한국수어 등 농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
3. 그 밖에 농문화 육성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한국수화언어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83.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정기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7조(정기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44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 현상, 관리, 수리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무형문화재법 제22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무형문화재에 대해 전수교육, 전승활동, 전승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해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문화재보호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84.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유산의 조사와 연구 및 자료 발간
2. 문화유산의 보호, 관리, 정비 복원 및 활용
3.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수장, 전시
4.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5. 박물관·전시관의 위탁 관리
6. 그 밖에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13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문화유산의 조사, 보호, 보존관리, 정비, 복원, 활용에 관련된 사업을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인에게 우선하여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위임 사무	X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 조례	

85. 「강원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사무	○	강원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공 · 민간

86.「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
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
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위탁) ① 도지사는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
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기념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기념관 운영을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사무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공공 · 민간

87.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사무	○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 · 민간

88.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보훈단체 지원) 보훈단체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순례사업
3.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사업
4.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음.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국가보훈 기본법	위임 사무	○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 · 민간

89. 「강원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조치)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나. 「아동복지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강원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아동 그룹홈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중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사무	○	강원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 · 민간

90.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의 위탁)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회관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사무	○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공공 · 민간

91. 「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정부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법인화를 유도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입소 생활인들의 인권보장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개인운영시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설 거주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시 시설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시장·군수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92.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액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자금 대여) ⑤ 도지사는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임 사무	○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공공 · 민간

93.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제8조(사회공헌정보센터)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에 관한 실적을 관리하고 사회공헌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하기 위하여 강원도사회공헌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사무	○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공공 · 민간

94.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2호, 2020. 3. 31.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고독사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사무	○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공공 · 민간

95.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5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할 수 있다

1. 독립운동의 추모사업
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
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전시관련 사업
4. 독립운동가 발굴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에 필요한 학술행사 지원
5.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학술 및 문화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독립운동 추모·기념·계승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5조의 사업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국가보훈 기본법	위임 사무	○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공공 · 민간

96.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수준 및 지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사회복지사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97. 「강원도 보육 조례」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강원도 보육 조례」

제8조(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영유아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영유아보육법	위임 사무	○	강원도 보육 조례	공공 · 민간

98.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사회서비스원에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다.

제16조(사무 및 사업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관계 법령 및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속하는 사업을 위탁할 때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공공 · 민간

99. 「강원도 재활병원 조례」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강원도 재활병원 조례」

제4조(위탁 운영)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료법인)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대학교 의료법인
2. 공공의료기관
3. 사립대학교 의료법인
4. 종합병원 또는 재활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

② 병원 관리·운영의 위·수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장애인복지법	위임 사무	○	강원도 재활병원 조례	공공 · 민간

100. 「강원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강원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효행 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강원도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증진에 관한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및 홍보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
5.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효행장려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1.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5조(권한 위임 등)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제41조 관련)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 관리) 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종사원의 정원은 장애인을 전체 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정한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사무	○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 · 민간

102.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노인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2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도지사의 권한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사무	○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공공 · 민간

103.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1조(위임·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의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7조(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발달장애인법	위임 사무	○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공공

104.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2(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105.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장기요양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06.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85조(권한위임 등)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장려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사무	○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공공 · 민간

107.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따른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고령친화산업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08.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

- 제7조(교육)** ①도지사는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을 인증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장애인등편의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	

109.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학교밖청소년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110.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 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위탁 운영) ① 도지사는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청소년활동법	위임 사무	○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소년단체

111.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법인의 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여성 및 가족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
4. 여성 및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양·레저 사업
5. 여성관련 교육·연수시설간의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
6. 국내·외 여성의 교류협력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
7.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및 관리
8. 여성·가족·보육·아동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부처 및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제14조(권한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법인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는 필요한 경우 수련원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법인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련원 시설관리 및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112.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7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 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외국인처우법 다문화가족법	위임 사무	○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공공 · 민간

113.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5조(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청소년의 참여활동 지원) 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예산 수립 과정 등에 참여

또는 의견 제안 등

2.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심의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법	위임 사무	○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청소년단체

114. 「강원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해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제9조(실태조사)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

2.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5.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
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강원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 ① 도지사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 및「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학교폭력예방법	위임 사무	○	강원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 · 민간

115.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전체 소속공무원 등에게 실시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성인지 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조(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3조(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에 따라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4조(주요사업) 센터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사업 : 여성의 취업, 창업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과정 개설·운영
2. 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 : 취업·창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상담·알선
3. 후생복지사업 : 수강생 자녀를 위한 유아놀이방 운영, 휴게실, 식당 등
4. 그 밖에 여성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7조(운영의 위탁·지정취소 등) 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과 관련된 그 밖의 규정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실적 부진 등 영 제29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4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무의 위탁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양성평등기본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116.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② 도지사는 자살 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의한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예방센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자살예방법	위임 사무	○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민간

117. 「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2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1

「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강원도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광역치매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관리·운영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치매관리법	위임 사무	○	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민간

118.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8조(교육 및 홍보지원 등) ① 도지사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국민건강증진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119.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제10조(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도지사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국민건강증진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120. 「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법률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효율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정신건강복지법	위임 사무	○	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 · 민간

121. 「강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금주 및 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국민건강증진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122.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병원체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약품 등의 비축
11.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12.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고시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운영)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제7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

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추진
2. 도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조사·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3. 도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대응 교육, 훈련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홍보
4.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5.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6.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7.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단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감염병예방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23.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업무 지원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설치 등) 강원도지사는 강원도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업무
2.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4. 시행계획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5. 공공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6.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 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위임 사무	○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공

124.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노인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 운영) ① 도지사는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병원·종합병원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2. 강원도강릉의료원장, 공공의료기관장 및 국·공립 대학교병원장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민간위탁 관련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노인복지법	위임 사무	○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 · 민간

125.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기금의 운용)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용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용자 대상) 기금의 용자대상은 강원도 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사람 중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용자금 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용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용자업무 위탁 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식품위생법	위임 사무	○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민간

126.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제25조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제7조(위탁관리) ① 본 대상의 폭 넓은 홍보를 통해 우수한 농어업인을 발굴하고 엄정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② 위탁기관은 도지사가 별도로 선정한다.

제8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매년 11월중에 실시한다.

② 훈격은 도지사와 위탁기관장 공동명의로 시상한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농어업경영체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127.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②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4.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6.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해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농업식품기본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128.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18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과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거버넌스”란 신농정 실현을 위해 농업분야 민·관·전문가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정책의제의 결정, 목표설정, 실행·평가 등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정책 네트워크 및 자치농정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거버넌스의 설치) ① 도지사는 신농정 사업 발굴 및 정책형성 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거버넌스를 설치한다.

1. 강원도만의 미래 지향적인 지역농정에 대한 조사, 분석, 연구
2. 중앙정부의 농정변화 및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한 방안 연구

3. 도민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4. 농촌마을 과소화·공동화 방지 등을 위한 시책 발굴
5. 농업인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조사 연구
6. 중앙농정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책사업 발굴
7. 신농정 실현을 위한 포럼 등 운영
8. 그 밖에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거버넌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 소속기관, 도 출자·출연 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민간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따른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제10조제1항과 같이 거버넌스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농업식품기본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	

129.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4. 곤충산업 관련 교육·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관련단체 육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농가, 업체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련단체 구성원(농가·업체 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곤충산업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30.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제5조(영농지원 신청 및 선정) ① 경운·정지 등 영농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농작업 대행(위탁)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농작업 대행사업자 지정) ① 농작업을 대행(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출된 사업자 신청서를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사업자 지정을 요청하고, 시장·군수는 최종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사업비 신청 및 지급) ① 농작업을 대행하고 영농 작업비를 신청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농작업 대행 작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농업식품기본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131.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

「종자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孢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한다.
6. "보증종자"란 이 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眞僞性)과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採種)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종자 또는 묘와 종자산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 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종자 및 묘 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
2.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4.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종자생산 및 주관기관) ① 종자 생산·수매기관은 도 보증종자 생산·보급사업을 위하여 보급종자를 자체 생산 또는 농업인 등에게 위탁 생산할 수 있다.

제12조(종자 수매) ① 제4조의 심의회가 결정한 도 보증종자 생산 계획에 따라 위탁 생산된 종자는 수매를 원칙으로 한다.

② 포장검사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로 종자 검사에 합격한 종자만을 수매한다.

③ 보급종자는 종자 생산·수매기관의 자체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창고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타 기관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 보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사업의 위탁) ① 종자 생산·수매기관은 도 보증 우량종자 생산·보급 사업의 일부를 농협중앙회 또는 지역농협과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감독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종자산업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	

132.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쌀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훈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의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업무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쌀가공품 품평회 개최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쌀가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게 위탁한다.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쌀가공산업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	

133. 「강원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의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3.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와 유실·유기동물 등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
4.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5.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
6.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허가와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7. 제38조의2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정기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와 관련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7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 서면조사, 현장조사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연구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강원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의 실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동물보호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134.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⑧ 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유효기간 연장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산림교육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135.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산림기본법」

제26조(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인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등 임업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독림가(篤林家)"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훈련등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 또는 산림경영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및 상담·자문·지도(이하 "교육·훈련등"이라 한다) 업무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③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임업인 등의 경영안정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임 및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산림기본법 임업진흥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136.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4. 자연보전관·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 구역은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금액·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① 시·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및 국민들에 대한 자연환경보전 중요성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자연환경교육·연수·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습원을 둘 수 있다.

② 자연환경학습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가 학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자연환경보전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137.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사항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심의는 분야별로 전문 연구·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도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속가능발전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대한 업무의 위탁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의 일부를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속가능발전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38.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와 관련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교육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3.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
4.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단체일 것
2. 법 제16조의 환경교육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환경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15조(환경교육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 등의 실시를 도 환경교육센터, 지역환경교육센터 및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 따라 인증을 받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환경교육진흥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139.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7조(환경산업 추진)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산업 국내·외 시장동향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도내 환경산업체의 협업 촉진을 위한 협의회 운영
 3. 도내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특허기술 등 사업화 지원
 4. 도내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정부나 강원도가 출연·출자한 기관 및 단체
2.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환경기술산업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40.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도지사는 강원도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강원도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할 때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평가지표의 개발 등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녹색성장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141. 「강원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4. 자연보전관·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 구역은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금액·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휴식지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식지"란 동강유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휴식지의 관리) ① 휴식지는 원칙적으로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 등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자연환경보전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	

142.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②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이 직접 현지의 조사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 탐사 또는 청문·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7조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8조(자연환경조사) ①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제27조(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18조의 자연환경조사 및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생물다양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물다양성 연구 및 자연환경조사
2. 생물종 목록 구축
3. 생물다양성 조사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 지원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연구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 절차·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143.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군·자치구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관리·운영을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자전거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44.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 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해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업무의 위탁) ③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 나.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 다.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① 도지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5조, 제9조에 따른 현장점검과 부실추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할 경우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조(품질 및 안전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55조와 제6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서 품질시험 및 검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145.「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사업)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건축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146.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2.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 소유자 또는 토지등 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① 시장·군수 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한다)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신탁업자,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군수 등 및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지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지원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으로 한정한다)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

4.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한다) 수립

5. 관리처분계획 수립

6.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28조(권한의 위임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정비사업지원기구,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08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운영
2. 제115조에 따른 교육의 실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는 시장·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시행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주민소득원 개발사업은 시장·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의 방법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도시정비법	위임 사무	○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공공 · 민간

147.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해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제5조(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으로 연결시켜 주는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③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특별교통수단의 차고지 운영과 통신망 연결 등에 대해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부서를 두거나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교통약자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148.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운영 조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①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운영 조례」

제9조(업무 위탁) ① 도지사는 버스정보시스템의 연계·호환과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장비) 구축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교통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관리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통합교통체계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운영 조례	

149.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사업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영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2. 주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지원
 3. 도시재생 관련 홍보
 4.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자문
 5.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
 6.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및 지원
 7.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방안 등 자문
 8.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의 창업·운영 등에 대한 자문
 9.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자문 및 지원
 10. 그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 ③ 도지사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도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도시재생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0.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의 거리와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도 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 대책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제4조(시책 수립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 시책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접경지역 생활여건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
2. 접경지역 주민소득 창출사업
3.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사업
4. 서비스 우수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5. 민·군 갈등 해소를 위한 체육대회 등 상호교류 지원
6. 접경지역 군부대 위문공연 지원
7. 모범 장병 등에 대한 지역 문화탐방 지원
8. 접경지역 문화예술 진흥 등 지원
9. 접경지역 시·도와의 연계협력 추진사업
10. 접경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하여 제4조제1항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접경지역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151.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5조의2(업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의 추진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업무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5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간의 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 교류협력사업
2. 북한 주민의 생활개선사업
3.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자료 조사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남북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8조(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남북교류협력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152. 「강원도 통일교육·문화 활성화 조례」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3(통일교육주간)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강원도 통일교육·문화 활성화 조례」

제4조(통일교육) 도지사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통일교육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통일·안보 현장체험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3.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강원도민 및 공직자의 통일교육
4. 이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통일문화) 도지사는 통일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통일문화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통일과 관련한 문화행사 및 기념사업 등
2. 평화통일 방안 모색 등을 위한 학술회의
3.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기록물에 대한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4. 이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통일주간 운영) ②통일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통일교육 사업
2. 제5조에 따른 통일문화 사업
3. 유공자 포상
4. 이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업무를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통일교육지원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통일교육·문화 활성화 조례	

153.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주거지원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의3(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한다.

8의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정착지원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허가 업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거주지 보호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4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2.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또는「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북한이탈주민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154.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 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비용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관서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을 말한다) 외의 사람에게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복지시설 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제10조(직장어린이집 운영)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육아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서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직장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따른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소방공무원 복지법	위임 사무	○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민간

155. 「강원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조대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운영한다.

1. 일반구조대: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대(隊) 이상 설치하되, 소방서가 없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지역의 중심지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2. 특수구조대: 소방대상물, 지역 특성, 재난 발생 유형 및 빈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가. 화학구조대: 화학공장이 밀집한 지역

나. 수난구조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지역

다. 산악구조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등 산악지역

라. 고속국도구조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이하 "고속국도"라 한다)

마. 지하철구조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

3. 직할구조대: 대형·특수 재난사고의 구조, 현장 지휘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또는 소방본부에 설치하되,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테러대응구조대: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안전처 또는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따라 설치된 화학구조대와 직할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조대의 출동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 등"이라 한다)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구조대(이하 "119시민수상구조대"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강원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교육훈련) ① 소방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선발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요원 : 스킨스쿠버,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법, 근무요령 등
2. 수변안전요원: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 물놀이 안전지도, 근무요령 등

② 수난구조요원 교육훈련은 40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119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156.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항라목의 사업목적으로 정부기관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도단위 단체를 말한다.

제9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이 제3조제1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사무	○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공공 · 민간

157.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 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이 조례에 따른 향토음식 관련 업무를 개인,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사무	○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공공 · 민간

158.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보건환경연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

② 연구원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지원의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업무량,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구원의 지원(支院)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시설 이용 등) 연구원은 보건·환경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또는 환경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건환경에 관한 실험·검사를 할 수 있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연구용역 사업) ① 원장은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 용역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용역 사업 중 연구원이 수행할 수 없는 분야는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보건환경연구원법	위임 사무	X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159.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제5조(사업)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시설 조성
2. 기술연구, 전시관 등 관련업체 입주 등 해양레저관광 산업단지 조성
3.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
4.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전시회 및 교류사업
5.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6.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7.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사무를 제5조의 사업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위임 사무	○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공공 · 민간

160.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 조례」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4. 자연보전관·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5조(연구공원의 관리) ① 연구공원은 원칙적으로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자연생태를 연구·교육하는 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위탁관리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자연환경보전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 조례	

161.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 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23조(자료의 양여 등) ①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상호간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교환·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무상이나 유상으로 양여·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4조(박물관의 관리) ① 박물관은 원칙적으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박물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박물관미술관법	위임 사무	X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162.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⑤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 제12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검사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품목 제조의 보고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별표 3]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농림축산검역본부

3의2.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4. 「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5.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제3조(검사·시험 등의 신청) ①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여 이하 “시험소”라 한다)에 검사·시험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관계 법령에 규정한 신청서식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료의 양을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위탁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시험소와 위탁검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근거 법률	사무 유형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임 사무	○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공공



강원도 사무의 위탁 통합 조례(안)

가.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의 주요 내용

□ 「지방자치법」 등 법령으로 정한 강원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 부문(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개인) 및 공공부문(공공기관·공공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강원도의회는 사전 동의, 수탁기관 선정, 지도·감독·평가 등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소관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나. 근거법률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4조 제2항·제3항, 제151조,

다. 조례안 검토 및 개정시안

현행	개정안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강원도 사무의 위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51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3. “위탁사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도지사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삭제<2019.4.5.> ③ 삭제<2019.4.5.>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3. “위탁사무”란 도지사가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 중인 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 중인 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강원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공공시설물 관리 등 ② 도지사는 제1항 위탁사무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의2(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계약마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도지사가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제5조(의회의 동의) ①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임·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획 동의안을 위탁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탁기관 또는 위탁사무의 변경, 예산의 증감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위탁 동의안) ①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의2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

현행	개정안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유발생시마다 개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강원도의회 의원과	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심의를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의회 의원과 도 관계

현행	개정안
도 관계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7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	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도 소속 공무원과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8조(계약 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

현행	개정안
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의2(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기관은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사항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재위탁·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 지원액,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일반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 수탁기관의 장은 도지사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의2(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기관은 법령, 조례 또는 도지사의 지시 및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기부하는 경우 이를 받아드릴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⑧ 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⑨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의2(사용료 징수 등)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④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 내에 증·개축 또는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기부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⑥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⑧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사용료 징수 등)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현행	개정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해당 위탁사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대상 시설인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휘·감독)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정지·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감사 등)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정지·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해마다 한차례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관·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관·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이	제15조(이의신청)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현행	개정안
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소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모든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성과 평가) ① 도지사는 모든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위탁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19.4.5.> 제15조 삭제 <2019.4.5.>	제17조(위탁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 비용의 환수, 물품 등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 가칭 「강원도 사무의 위탁 조례」안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51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도지사가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 중인 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 중인 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강원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공공시설물 관리 등

② 도지사는 제1항 위탁사무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의2(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제5조(의회의 동의) ①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임·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획 동의안을 위탁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탁기관 또는 위탁사무의 변경, 예산의 증감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위탁 동의안) ①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의2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

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심의를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의회 의원과 도 관계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도 소속 공무원과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전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8조(계약 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사항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재위탁·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 지원액,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일반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 수탁기관의 장은 도지사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의2(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법령, 조례 또는 도지사의 지시 및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 내에 증·개축 또는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기부하는 경우 이를 받아드릴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⑥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⑧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사용료 징수 등)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감사 등)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정지·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해마다 한차례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관·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소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성과 평가) ① 도지사는 모든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 비용의 환수, 물품 등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

제3조(적용례) 도지사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

